예 산 총 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55,737,343	37,672,120
일반회계	950,167,065	28,505,012
특별회계	305,570,278	9,167,108
공기업특별회계	219,176,962	6,575,30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2,302,291	2,469,0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078,402	2,462,35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4,796,269	1,643,888
기타특별회계	86,393,316	2,591,799
주택사업특별회계	3,640,687	109,221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4,094,492	122,83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0,000	3,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789,101	53,673
교통사업특별회계	14,472,194	434,16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8,387,673	1,151,63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3,909,169	717,275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 세입 · 세출 예산 "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710,66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